

행정법 각론

편저자 : 이 상 현

※ 정오 및 오탈자를 수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p.18 (2) 합의제	① 의의 : 복수의 자연인에 의하여 구성되고~	복수의 자연인에 의하여 구성되고~
▶p.80 (5) ②	② 제한 : 주무부장관이나	② 중복 감사의 통지 : 주무부장관이나
▶p.82 (4) 제소사유	(4) 제소사유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② 감사결과 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조치요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이다(지자법 §17-①).	(4) 제소사유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 감사결과 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조치요구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이다(지자법 §17-①).
▶p.83 (6) 제소기간	(6) 제소기간 주민소송은 ①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종료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종료된 날) ②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③ 조치요구 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 ④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지자법 §17-④).	(6) 제소기간 주민소송은 ①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 ②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③ 조치요구 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④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지자법 §17-④).
▶p.88 5번 판례 삭제	삭제	
▶p.109 ㉠ 원칙	~ 이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무효가 될 뿐이다.	~ 이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무효가 될 뿐이다.
▶p.112 (1) ②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p.113 서설	(☑ 교육감, 교육위원회)을 규정하고 있다.	(☑ 교육감)을 규정하고 있다.
▶p.115 (1) ① <지방자치법> 수정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행정법 각론

▶p.166 〈국가공무원법〉박스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p.171	(7) 임명일자외의 소급금지(공무원임용령 §7-①) ②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다.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추서하는 경우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시키는 경우	(7) 임명일자외의 소급금지 ② 예외 :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의 전날에,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임명일로 본다(공무원 임용령 7조).
▶p.174 표 - 직권휴직 [기간]	~[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 ~	~[단,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
▶p.176 ② 사유	② 사유 : 임용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공법 §73의3-①). 다만, ①에 해당하는 사유와 ㉠, ㉡, ㉢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 ㉡, ㉢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국공법 §73의3-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재(再)직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일정한 사유(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2년에 달한 때)로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사유 : 직위해제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 2. 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재(再)직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p.192 (2) ① 의의	〈판결요지〉	관련판례

행정법 각론

▶p.199 [관련판례]	3. 강간치상죄로 형사소추된 경우 출장근무 중 근무장소를 벗어나 인근 유원지에 가서 동료 여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그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치상죄로 형사소추까지 당하게 된 경우,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8.2.27, 97누18172).	3. 강간치상죄로 형사소추된 경우 <u>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 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u> (대판 1998.2.27, 97누18172).
▶p.202 [관련판례] 3.	3. 출장 중 강간치상 ①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 ② 국민으로부터 ~	3. 출장 중 강간치상 ① <u>국민으로부터 ~</u> ② 출장근무
▶p.208 ㉔	㉔ 재심사청구 :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공법 §82-②). 이 청구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공무원징계령 §24). 그러나 직근 상급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㉔ 재심사청구 등 :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법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공법 §82-②). 이 청구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u>날로부터</u>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공무원징계령 §24). 그러나 직근 상급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
▶p.209 ⑦	⑦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다. ~	⑦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u>금전 취득이나 횡령 등의 징계사유인 경우에는 5년</u> 이다.~
▶p.212 ②	② 감면	② 감면 등
▶p.239 (3) 경찰집행기관	~(㉔ 소방공무원, 전투경찰대, 헌병, 청원경찰)~	~(㉔ 소방공무원, 헌병, 청원경찰)~
▶p.239 (4) 청원경찰 ① 박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u>그 관리 하에</u>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u>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u>
▶p.240 (1)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p.243 ㉔ 임의동행	㉔ 임의동행 :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경직법 §3-②). 이는	㉔ 임의동행 :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u>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u> ,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경직법 §3-②). 이는 ~~~
▶p.249 ㉔ 손실보상 박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u>생명·신체 또는</u>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u>생명·신체 또는</u>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행정법 각론

▶p.251 ① 문제점 박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u>2의2. 범죄피해자 보호</u>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p.280 (2)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공물은 그 사용가치에 따라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가치에~	공물은 그 사용가치에 따라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을 말한다. <u>여기서 행정목적이란 행정주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되는 것 또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귀속과는 무관하다.</u> 따라서 자본가치에~																																				
▶p.280 (3)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삭제																																					
▶p.280 [공물과 재산의 관계] 표	<table><tr><th colspan="2">국유재산법</th><th colspan="2">강학상 개념</th></tr><tr><td rowspan="4">행정재산</td><td>공공 재산</td><td>공공물</td><td rowspan="4">공물</td></tr><tr><td>공공용 재산</td><td>공공용물</td></tr><tr><td>기업용 재산</td><td>공용물</td></tr><tr><td>보존재산</td><td>보존공물</td></tr><tr><td colspan="2">일반재산</td><td>재정재산</td><td>사 물</td></tr></table>	국유재산법		강학상 개념		행정재산	공공 재산	공공물	공물	공공용 재산	공공용물	기업용 재산	공용물	보존재산	보존공물	일반재산		재정재산	사 물	<table><tr><th colspan="2">실정법상 개념</th><th colspan="2">강학상 개념</th></tr><tr><td rowspan="4">행정재산</td><td>공공용재산</td><td>공공용물</td><td rowspan="4">공물</td></tr><tr><td>공공재산</td><td>공용물</td></tr><tr><td>기업용 재산</td><td>공용물</td></tr><tr><td>보존재산</td><td>보존공물</td></tr><tr><td colspan="2">일반재산</td><td>재정재산</td><td>사 물</td></tr></table>	실정법상 개념		강학상 개념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공공용물	공물	공공재산	공용물	기업용 재산	공용물	보존재산	보존공물	일반재산		재정재산	사 물
국유재산법		강학상 개념																																				
행정재산	공공 재산	공공물	공물																																			
	공공용 재산	공공용물																																				
	기업용 재산	공용물																																				
	보존재산	보존공물																																				
일반재산		재정재산	사 물																																			
실정법상 개념		강학상 개념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공공용물	공물																																			
	공공재산	공용물																																				
	기업용 재산	공용물																																				
	보존재산	보존공물																																				
일반재산		재정재산	사 물																																			
▶p.282 참고	③ 권원(권原+284)의 존재 :	<u>③ 권원(權原)의 존재 : 공용지정을</u> 하기 위해서는~																																				
▶p.344 38번 정답	②	<u>③</u>																																				
▶p.362 (3) 확장 ①	① 잔지(殘地)수용 : 잔지수용이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공토법 §74-①).	① 잔지(殘地)수용 : 토지의 일부에 대한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잔여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p.362 (3) 확장 ②	② 완전수용 : 완전수용이란 토지의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때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때,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당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공토법 §72).	② 완전수용 : 토지의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때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때,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당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p.362 (3) 확장 ③	③ 이전수용 : 지상물건의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리고 이전료가 당해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물건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공토법 §75-①).	③ 이전수용 : 지상물건의 이전이 곤란하거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u>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u>																																				
▶p.367 [관련판례]	2. 합의가 성립 후 추가청구	2. 합의가 <u>성립한 이후</u> 추가청구																																				

행정법 각론

▶p.371 ㉔ 행정소송 표	제소기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토법 §85-①). 여기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김동희).	제소기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u>90일 이내</u> 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u>60일 이내</u> 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토법 §85-①). 여기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김동희).
▶p.371 ㉔ - 박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u>90일 이내</u> 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u>60일 이내</u> 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p.391 판례특강 2.	2.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현 사업시행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訴)에 의하여야 한다.	2.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이 정한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함이 상당할 뿐 아니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3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할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업자(현 사업시행자)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연가산금은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용재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은 수용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訴)에 의하여야 한다(<u>대판 1997.10.24. 97다31175</u>).
▶p.391 판례특강 3. 삭제	삭제	
▶p.423 6.	6. 불허가처분에 대한 구제	6. <u>구제</u>
▶p.423 6. (3), (4) 변경	(3)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4) 신고포상금의 지급 ~	<u>7. 기타제도</u> (1)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2) 신고포상금의 지급 ~
▶p.423 7. → 8. 변경	7.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특례	<u>8.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특례</u>
▶p.430 관련판례 6번	삭제	
▶p.459 3번 문제 - ②번 지문	② 현재 환경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② 현재 환경행정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u>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u> 등이 제정되어 있다.
▶p.484 3. (1)	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u>때</u>)에 성립한다.

행정법 각론

▶p.487 (2) 행정쟁송 ㉞	㉞ 신청의 상대방 :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찰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국기법 §66-①).	㉞ 신청의 상대방 :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u>같은 지방국세청장과 관찰에 속하는 경우</u>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u>(이 경우에는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u>,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국기법 §66-①).
▶p.490 ③ 지방세 ㉞	㉞ 필요적 전치 여부 : 과거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있었다. 심사청구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던 구 「지방세법」 제78조의 위헌판결에 따라 임의적 절차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 현재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법적 성질이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지기법 96조⑥)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절차로 볼 가능성이 많다.	㉞ 필요적 전치 여부 : 과거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있었다. 심사청구를 필요적 절차로 규정하던 구 「지방세법」 제78조의 위헌판결에 따라 임의적 절차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 <u>현행법상 지방세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데 「지방세기본법」에서 필요적 전치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임의적 절차로 파악될 가능성이 많다.</u> <u>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u> <u>지방세기본법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u>